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교부세 지급대상 확대〉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88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방교부세 지급대상 확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재봉의원 등 19인
2. 제안연월일 : 2025. 2. 14.
3. 회부연월일 : 2025. 2.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인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자치구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상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Ⅲ. 검토의견

1. 지방교부세 지급대상 확대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교부세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정의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u> 와 같은 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u>지방자치단체조합</u> 을 말한다. 3. ~ 7.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u> ----- ----- <u>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제199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u> 를----. 3. ~ 7.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法人)로서,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 의회

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함.

최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추진동향을 살펴보면, 충청권 특별지자체, 광주·전남 특별지자체, 지리산권 특별지자체, 접경지역 특별지자체 및 새만금 특별지자체 등이 설치 준비 중에 있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동향]

구 분	주요내용	경 과
충청권 특별지자체	- 4차산업 혁명 특화 - 국가 기능 연계에 최적화된 균형발전허브 구축	- 시·도지사간 특별지자체 추진 합의('22.8.29.) - 합동추진단(준비기구) 설치 승인('22.10.21.)
광주·전남 특별지자체	- 산학연 클러스터 구성을 통한 글로벌 에너지 수도 도약	- 특별지자체 추진 합의('22.7.28.) - 광주·전남 특별지자체 설립 연구용역 추진('22.8.~12.) - 분야별 초광역협력 사무발굴('23.1.~)
지리산권 특별지자체	- 관광개발에 국한된 사무 - 운영 자율성 부족 등 기존 조합¹⁾의 한계를 극복	- 단체장 간 협약 체결('22.10.26.) - 특별지자체 추진 관련 시·군 부단체장 회의('22.11.29., '23.4.4.)
접경지역 특별지자체	-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및 광역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	-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22.1.~9) - 접경지역 특별지자체 설립방안 관련 세미나 개최('22.11.3.)
새만금 특별지자체	- 새만금 메가시티 실현 - 속도감 있는 새만금지역 개발 및 개발 효과 확산	- 3개 시·군 및 전북도 간 특별지자체 설치 논의('22.8.22.) - 새만금 특별지자체 추진방향 등 연구용역 추진('22.9.~) - 전북도의회 내 '새만금 특별지자체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23.4.14.)

자료: 행정안전부

1)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그런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교부세를 지급받을 수 없음. 이에 개정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한 광역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지방교부세를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 「지방자치법」 제206조²⁾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지방교부세를 배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충돌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이 반영된다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자치단체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위에서 지방교부세를 이중으로 교부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구성) 지리산권 7개 시·군*으로 '08년 9월 조합 승인
* 전북 남원·장수, 전남 곡성·구례, 경남 하동·산청·함양
 - ▶(조직) 1본부 2과 4팀, 총 18명(조합장 4급) * 정원 21명
 - ▶(현황) 하동군, 곡성군에서 조합 미참여 의사를 밝혀 5개 시·군으로 운영 중

2) 「지방자치법」

제206조(경비의 부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 1호의 교부세 지급대상인 ‘재정적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자치단체는 기존 교부대상인 자치단체와 중첩되므로, 별도 교부 시 중복지급 문제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3